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4. 4. 30.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4년 4월 9일
-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2024년 4월 22일
- 라. 상정일자: 제25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4. 4. 2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감사담당관 신희순)

- 가. 제안이유
 - 자치구별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가 상이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춰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등 용어 정의 신설(안 제1조의2)
 - 안전 심의 금액 기준 동일(안 제5조제3호가목)
 - 고충민원 대상 정의, 신청대상 정비(안 제6조, 제7조제2항)
 -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횟수 정비(안 제11조제1항~제2항)
 - 세무조사기간 연장, 연기신청 처리기한 정비(안 제15조~제16조)
 - 세무업무 민원접수 이원화로 납세자 혼란·불편해소 조문 삭제(현행 제24조~제30조) 및 정비(안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서울시에서 구(區)별로 다르게 운영하고 있는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를 통일화하여 구민들에게 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의2(정의)에서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 “고충민원”(처분이 완료된 사항)과 “권리보호요청”(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을 따로 구분하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안 제4조(납세보호관의 업무)에서 납세보호관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우리 구(區)의 현실적인 실정에 맞게 표준안을 참고하여 정비함.

- 안 제7조제2항(고충민원의 신청기간)에서 고충민원이 부당이득반환청구 성격일 경우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추가함. 다만, 「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국세의 고충민원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아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지방세 고충민원의 신청 기간을 검토할 필요성은 있다고 사료됨.

그러나, 본 조례의 제7조항은 자치구별로 다르게 운영되던 고충민원 신청 및 처리기간을 일원화하여 자치구 간 형평성 있는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기에 추후 자치구 담당자 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임.

- 안 제11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를 반영하고, 자치구별로 민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표준안을 참고하여 개정함.

- 안 제15조(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제16조(세무조사 연기신청)에서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기간과 조사 연기신청 기간의 규정을 “7일 이내”로 통일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치구 간 제도의 형평성을 갖추하고자 함.

- 현행 조례 제24조(기한의 연장신청)~제30조(시행규칙)를 삭제함. “납세자보호관”이 세무부서가 아닌 구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인 감사담당관에 배치되어 있고 해당 조항의 사항에 관한 처리는 본질적으로 징수과에 있어 업무처리가 이원화되어 있는 측면이 있음. 또한, 현실적으로 제도를 시행하면서 납세자보호관의 판단

이 가이드라인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있기에 납세자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을 정비하려는 것은 필요한 조치라고 여겨짐.

○ 검토 결과

- 「지방세기본법」 제77조를 근거로 납세자보호관 배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우리 구(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제정. 2018.10.4.)를 제정하여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19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관련 조례 제정 당시 상위법령에서 시·군·구 실정에 맞게 자치법규로 정할 것을 위임한바, 서울시 자치구별로 세부 사항의 통일성이 다소 떨어진 측면이 있었음.
- 서울시는 지난 ’23년 2월 「자치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 일제 정비 추진 통보」를 통하여 납세자에게 혼란을 주거나 자치구 간 형평성을 저해하는 조문에 대해 일제 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행정안전부 표준안을 배포하였음.
- 이에 따라 우리 구(區)에서는 표준안을 참고하여 납세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도모하고, 서울시 자치구 간 통일성 있는 사업 시행으로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체계나 자구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318 호
----------	---------

제출연월일: 2024. 4.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자치구별로 납세자보호에 관한 조례가 상이하여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춰 통일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고충민원, 권리보호요청 등 용어 정의 신설(안 제1조의2)
- 나. 조문문구 수정(안 제2조의제1항, 제17조)
- 다. 안전 심의 금액 기준 통일(안 제5조제3호가목)
- 라. 고충민원 대상 정의, 신청대상 정비(안 제6조, 제7조제2항)
- 마. 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횟수 정비(안 제11조제1항~제2항)
- 바. 세무조사기간 연장, 연기신청 처리기한 정비(안 제15조~제16조)
- 사. 세무업무 민원접수 이원화로 납세자 혼란·불편해소 조문 삭제(현행 제24조~제30조) 및 정비(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 2) 인권영향평가: 인권 침해 가능성 없음
- 3)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별도의 개선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2024. 3. 7. ~ 3. 27./20일간) 결과: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의한다.

제2조제1항 중 “한다)은 「지방세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을 “한다)은 법 제77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법 제77조제2항 및 영 제51조의2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2. 세무조사 · 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현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제5조제3호가목 중 “초과”를 “이상”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을 “(고충민원의 대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으로 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 중 “2회 이상”을 “3회 이상”으로,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

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회”를 “3회”로 한다.

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기간 종료일”을 “7일”로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개시일”을 “7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과의 구분)”을 “(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의 구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8조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이하 “권리보호요청”이라 한다)”을 “권리보호요청”으로 한다.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조의2(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u> <u>2. “세무부서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u> <u>3.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u> <u>4.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u> <u>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u>

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 2. 법 제2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의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 3. 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 4.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1. · 2. (생략)
- 3. 다음 각 목의 안건 심의를 법 제147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
 - 가.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처분금액이 100만원 초과인 안건
 - 나. (생략)

제6조(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 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의 대상은 지방세 관련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으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 3. 납세자권리현장의 준수 등에 관한 사항
-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

 -----.

- 1. · 2. (현행과 같음)
- 3. -----

 가. -----

 - 이상-----
 나. (현행과 같음)

제6조(고충민원의 대상) ① 고충민원의 대상은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으로 한다.

로 한다.

②·③ (생략)

제7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생략)

<신설>

제11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2회째 신청에 대해서는 처리 제외됨을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 없이 종결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고충민원의 신청기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 ① -----

----- 3회 이상 -----
----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② ----- 3회 -----

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생략)

제15조(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①·② (생략)

③ 납세자보호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조사기간 종료일 이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이 결정한다.

1. 2. (생략)

제16조(세무조사 연기신청) ①

(생략)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조사개시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③ (생략)

제17조(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과의 구분)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제18조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이하 “권리보호요청”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고충민원과 구분하여 처리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고충민원과 구분하지 아니하고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

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7일 -----
-----.

1. 2. (현행과 같음)

제16조(세무조사 연기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
----- 7일 -----
-----.

1.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고충민원과 권리보호요청

의 구분) -----
---- 권리보호요청-----

-----.

제24조(기한의 연장신청)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삭 제>

제25조(기한의 연장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삭 제>

1. 기한의 연장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기한의 연장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26조(가산세의 감면신청)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 감면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삭 제>

제27조(가산세의 감면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의견 및 사실 확인 결과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결정을 하여야 한다.

<삭 제>

1.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가산세 감면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28조(징수유예 등 신청)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같은 법

<삭 제>

시행령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징수유예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체납처분유예를 받으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9조(징수유예 등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의 의견, 사실 확인 결과 및 납세담보의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1.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승인
2.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 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불승인

제3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삭 제>